

1996. 3.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3. 7.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6. 3. 7.

다. 상정일자 : 제 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위원회 (1996. 3. 15.) 상정,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과장)

가. 제안이유

○ 현행 충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1986년 요율제정후 현재까지 적용 운영 되므로서, 매년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어 금번 환경부로 부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지시에 의거 적자폭을 다소 나마 해소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의 세분화

- 현행 4종(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 8종으로 업종세분화 (영업1종, 영업2종, 육탕1종, 육탕2종을 추가)

○ 하수도 사용료 요율인상 (평균 26.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가. 사전조치 이행사항

- 입법예고 : '96. 1. 11 ~ 1. 30. (20일간) 시보 및 게시공고
- 주민의견사항 없음.
-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96. 3. 6.
- 물가책실무위원회 심의 : '96. 3. 7.

나. 종합 의견

- 충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1986. 5. 1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요율인상없이 운영되어 년간 33억원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하수 처리장이나 하수도 시설투자비의 대폭증가 및 국.도비 지원감소 등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충주시 하수도 요금 톤당 원가는 78원으로 전국 평균톤당 원가 158원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사용 요금 현실화 추진을 촉구받고 있는 실정이며,
- 이에 따라, 요율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톤당 181원과 적정 인상율이 132.6%라는 판단자료가 제출된 바 있음.
- 그러나, 충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부의 물가정책 및 하수도 요금 적자해소를 고려하여 5개년 연차별 인상차원에서 금번에 인상율을 26.5%로 인상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4. 질의. 답변요지

[질 의]

-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을 26.5%보다 더 올려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은?

☞ 답변

- 한번에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적자 30억에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적정할 것으로 봄.

[질 의]

- 33억 적자중 시비와 도비 적자는?

☞ 답변

- 국도비지원은 19억, 13억정도는 시비(약 60%)임.

[질 의]

- 하수도 사용료가 1가구당 얼마정도 되는지?

☞ 답변

- 일반가정의 경우 1가구당 1,200원 정도임.

[질 의]

- 타시군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은?

☞ 답변

- 전국적으로 인상할 방침으로 원주 40%, 천안 15%등 평균 25%임.

[질 의]

-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제하고, 수안보에서 나오는 하수도 사용료로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비,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가?

☞ 답변

- 안됨.

[질 의]

-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을 26.5%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 징수방안은?

☞ 답변

- 상수도 요금에 따라 조정되는 것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붙임

○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증개정조례(안)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5월 납기분 사용료 고지서 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수도 요율표

부담금 구분	구간	요율
일반용	0㎥초과 ~ 10㎥까지	540원
	10㎥초과 ~ 30㎥까지	㎥당 100
	30㎥초과 ~ 50㎥까지	㎥당 150
	50㎥초과	㎥당 190
영업 1종	0㎥초과 ~ 10㎥까지	600원
	10㎥초과 ~ 30㎥까지	㎥당 110
	30㎥초과 ~ 50㎥까지	㎥당 160
	50㎥초과	㎥당 220
영업 2종	0㎥초과 ~ 10㎥까지	600원
	10㎥초과 ~ 30㎥까지	㎥당 110
	30㎥초과 ~ 50㎥까지	㎥당 160
	50㎥초과 ~ 100㎥까지	㎥당 220
	100㎥초과 ~ 500㎥까지	㎥당 270
	500㎥초과	㎥당 320
욕탕 1종		㎥당 110원
욕탕 2종	0㎥초과 ~ 200㎥까지	㎥당 22,000원
	200㎥초과 ~ 300㎥까지	㎥당 140
	300㎥초과 ~ 500㎥까지	㎥당 190
	500㎥초과	㎥당 240
산업용		㎥당 130원
공공용		㎥당 120원
공중용		㎥당 50원

【별표 2】

하수도 사용업종구분표

업 종	내 용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불, 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 보급소, 신체 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공용 급수전 ·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영업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영업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점 객업 · 공연장 · 속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 경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 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점 · 양조업, 제방업, 계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 (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 제조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 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영업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단, 운반 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 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멀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욕탕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탕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유바 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공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 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 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공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조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